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 등의 책무에 지역격차 해소시책 수립의무 명시>

■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876호)

2025.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국가 등의 책무에 지역격차 해소시책 수립의무 명시 ..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인철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7. 31.
3. 회 부 일 : 2025. 8.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돕기 위하여 청년발전에 필요한 시책 수립, 청년의 참여 보장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정책은 주로 수도권 위주로 실시되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발전과 성장을 위한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일자리, 교육, 주거 등의 분야에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여 청년이 어느 지역에서든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국가 등의 책무에 지역격차 해소시책 수립의무 명시

□ 개정안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③ (생략) <u><신설></u>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문화 등의 분야에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u>

□ 현행법 제4조¹⁾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①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②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 참여 보장, ③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④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시책 수립·실시, ⑤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의

1)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홍보 및 교육, ⑥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 마련 노력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역 간 격차 해소 시책마련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개정안은 청년정책이 수도권 위주로 실시되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발전과 성장을 위한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일자리, 교육, 주거 등의 분야에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어느 지역에서든 청년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2024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연차보고서」²⁾의 최근 10년 간 (2015~2024년) 청년의 지역 간 순이동 양상을 보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순유입이, 다른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순유출의 특성이 명확하게 나타남.

2)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2024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연차보고서」, 2025년 8월, p.10-11

[표 1]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청년(19-34세) 순이동 추세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2021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연차보고서」, 2025년 8월, p.11.)

□ 개정안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수립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비수도권 거주 청년에 대한 균등한 기회 제공 등과 관련하여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다만, 동법은 청년 정책과 관련된 ‘기본법’이며, 이미 「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³⁾

3) 「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 제21조(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시책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이라 한다)에서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확충, 교통·물류망 및 통신망 확충,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의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 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 주민과 지역의 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 간 시설 및 인력 공동 활용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제17조(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중장년 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에서 청년인구 유출 방지, 청년 일자리 확충 및 정착 촉진, 지역 인재 육성 등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할 것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임.

□ 국무조정실은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정책 수립 시에 ‘지역간 청년 삶의 질 격차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상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현행	개정안	정부 수정의견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③ (생략) <신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문화 등의 분야에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u>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청년정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지역간 청년 삶의 질 격차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인재의 취업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과 기업은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113